

2021년

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회

- 일시 및 장소 -

일시 : 2021년 12월 27일(월) 14:00-15:00
장소 : 온라인 ZOOM 회의 방식으로 진행

- 차 례 -

2021년 이사회 회의자료 ----- 2

2021년 집행부 및 임원 명단

- 회 장 : 이재민(서울대)
- 수석부회장: 안덕근(서울대)
- 부 회 장 : 강준하(홍익대), 이환규(영남대)
- 총무이사 : 오선영(숭실대)
- 연구이사 : 공수진(식약처), 유희진(안양대)
- 국제이사 : 이길원(성균관대), 이세련(전북대), 마광(절강대)
- 학술이사: 송지연(김앤장 법률사무소), 윤석준(김앤장 법률사무소), 이성범(법무법인 화우)
이주형(법원행정처)
- 기획이사 : 조영진(이화여대), 김민정(서울대)
- 출판이사 : 채은선(한국정보화진흥원), 박태정(인천대학교), 이동은(삼성경제연구소)
- 기금운용이사 : 박언경(경희대)
- 감 사 : 신동찬(법무법인 율촌), 유세열(법무법인 태평양)

2021년 이사회 회의자료

I. 개회선언

II. 참석인원 확인

III. 회장님 인사말씀

IV. 이사회 보고 및 논의 사항

1 학회위원회의 구성보고

- 가.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: 박노형, 최승환, 성재호, 이재형, 박덕영, 최원목
김대원, 정찬모, 왕상한, 서철원, 정영진, 이재민
- 나. 기금운용위원회: 박노형(위원장), 최승환, 성재호, 이재형, 박덕영, 최원목
김대원, 정찬모, 왕상한, 서철원, 정영진, 이재민
- 다. 학술상위원회: 정찬모(위원장), 강준하, 유희진, 오선영, 채은선, 박태정
- 라. 편집위원회: 강준하(위원장), 김여선(제주대), 마 광(중국철강대), 심영규(동아대)
오현석(계명대), 이길원(성균관대), 이로리(계명대), 이재민(서울대)
정찬모(인하대), 조영진(이화여대)

2 2021년 학회운영 관련 주요 의결사항

1) 회원 자격의 유지 및 상실

- 관련규정 : 정관 제9조 2항

학회 구성원 현황 (2021년 12월 현황)	전체 회원 수	151명
	이사 수	71명 ¹⁾

- 회원자격의 유지 및 상실 ²⁾

현재까지 총 8분이 3년간 회비(이사회비) 미납부: 미납부 이사들을 회원자격 상실로 처리할 것인지, 또는 이사에서 일반회원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

- 이사회비를 3년간 미납하신 분들에게 메일로 다시 안내하여 2021.12.31.일까지 미납시 이사 자격은 상실하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함.

1) 제12조(임원)

- (1) 본 학회에는 1명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, **70명 이내의 이사**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

2) 제9조(회원자격의 상실)

- (1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.
1. 사망 2. 탈퇴 3. 제명
- (2)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- 신규 이사 추천

오현석 교수 (계명대), 김경화 박사, 곽동철 교수, 유지영 박사

***이사명단 (71명)**

강병근, 강준하, 강호, 고준성, 공수진, 권현호, 권희환, 김규태, 김대식, 김대중, 김민정, 김병일, 김성중, 김여선, 김인숙, 김종범, 김준기, 김채형, 류예리, 마광, 박노형, 박덕영, 박민규, 박언경, 박원석, 박정현, 박지현, 박태정, 배정생, 서철원, 성재호, 손기윤, 송지연, 신희택, 심영규, 안덕근, 안민호, 오선영, 왕상한, 유선봉, 유준구, 유희진, 윤석준, 이길원, 이동은, 이로리, 이상진, 이성덕, 이성범, 이세련, 이재민, 이재형, 이주형, 이지형, 이환규, 이효영, 장승화, 정영진, 정찬모, 조영진, 조희문, 주진열, 주현수, 채은선, 채형복, 최송자, 최승환, 최원목, 최혜선, 표인수, *신동찬(감사, 2022년에 이사로 복귀)

2) 회비 관련 규정

가. 회비 면제 범위

- 국제경제법 교재 저술 참여자는 2020년부터 회비 면제임.³⁾ 그런데 이 회비 면제가 일반회원 회비 면제인지, 이사 회비 면제인지 불분명하여, 국제경제법 저자들의 회비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
 - o 교재 참여자 중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분들도 있음
 - o 교재 참여자들 중 이사가 아닌 분: 3분
- 국제경제법 교재 저술 참여자는 전체 회비 면제로 결정되었으나 내년 이사회에서 전체 회비 면제가 아닌 일반회비 면제로 변경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함

나. 이사회비 인상 여부

- 학회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측면 고려
- 현재 이사회비는 10만원으로 이에겐 일반회비 5만원이 포함되어, 이사회비는 5만원임⁴⁾
- 올해와 동일하며 문제 인식을 파악하였기에 내년에 인상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함. 기관회비 등 모색

3) 학술상 규정 및 신진학자학술상 규정 개정안

가. 학술상 규정

- 제5조 (심사대상과 선정)

변경전	변경 후
① (2018.11.26. 이사회에서 폐지)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발간된 「국	① (2018.11.26. 이사회에서 폐지)

3) 2019년 제2차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소급적용은 되지 아니합니다.

4) 참고로 대한국제법학회인 경우 일반이사 15만원(일반회비 3만원 + 임원기부금 12만원), 그리고 상임이사는 30만원, 국제법 평론회는 일반이사 10만원(일반회비 7만원 + 이사회비 3만원) 그리고 운영위원은 15만원. ILA는 일반이사 회비 15만원

<p>제경제법연구」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.</p> <p>③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. 본 조항의 추천을 위하여 출판이사는 해당 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상 심사대상 논문과 저서의 추천에 대하여 2회 이상 이메일로 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「국제경제법연구」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.</p> <p>③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. 본 조항의 추천을 위하여 출판이사는 해당 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상 심사대상 논문과 저서의 추천에 대하여 2회 이상 이메일로 공지하여야 한다.</p>
--	--

- 학술상위원회 규정 제3조 3항 및 신진학자학술상 규정 제5조 3항

변경 전	변경 후
<p>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12월 10일까지 시상여부와 시상자를 결정한다.</p>	<p>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7일전까지 시상여부와 시상자를 결정한다.</p>

3 기금운용 경과보고

가. 기금사용계획 의결

- 2021년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사용처는 ‘학회후진양성’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재확인함.
- 2021년 사용예정금액 의결 : 7,000,000원 (2021.7.21. 서면결의)
 - * 사용처
 - ① 신진학자 학술상 : 1명 * 100만원 = 1,000,000원
 - ② 신진학자 펠로우쉽 : 2명 * 각 300만원 = 6,000,000원

나. 2021년 기금집행 보고

- 신진학자학술상 위원회 및 신진학자 펠로우쉽 위원회에서 각 1인을 대상으로 선정된 바, 금일 총회 의결 후 총 4,000,000원을 집행할 예정임.
 - ① 신진학자 학술상 1인 : 1,000,000원
 - ② 신진학자 펠로우쉽 1인 : 3,000,000원

4 감사 추천건

- 관련 규정 : 정관 제13조 4항(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함)
- 경과보고
 - * 2018년도 총회 및 2019년 임시 총회 논의를 통해 감사선출과 관련하여 2인 중 1인은 회계사로 임명하여 학회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.
 - * 2014년도 총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인의 감사 중 1인은 유임을 하는 관행이

정착되었음.

- * 2020-21년 감사로 신동찬 변호사가 활동하였으며, 2021년 유세열 회계사가 새로이 임명됨. 이에 2022년 유세열 회계사는 유임되며, 신동찬 변호사를 대신할 새로운 감사 선출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사회에서 송실대 오선영 교수를 감사로 추천함

V. 기타 안건

VI. 폐회